

#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7.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우리구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한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 함(안 제3조)
- 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기하고자 교육 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함(안 제7조제4항)
- 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하향 조정 함(안 제7조제2항)
- 라. 교육에 관심있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성참여를 유도하고자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7조제3항)

## 3. 개정근거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2)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2008년 예산 편성시 반영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7. 8. 6 ~ 2007. 8. 2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07. 9. 4)
- 다. 신 · 구조문 대비표 1부.

##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중 “구세의”를 “구세와 구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조제3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 1인”을 “5급 이상 공무원 2인”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동조동항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학교교육에 관심이 있고 덕망있는 마포구민 5인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동항제 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위원의 위촉자격 및 임기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명 : <u>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u>  | 제명 : <u>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u>   |
| <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u> 제11조제6항 및 <u>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u>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   | <b>제1조(목적)</b> ----- 「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u> 」 ----- 「 <u>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u> 」 ---<br>-----<br>-----  |
| <b>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b>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u>구세의</u>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b>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b> -----<br>-----<br>-----<br>-----<br>-----<br>-----<br>-----<br><u>구세와 구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u> -----<br>-----   |
| <b>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생략)<br>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br>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br>1. 구본청 <u>4급 이상</u> 공무원 1인<br>2. 구의회 의원2인<br>3. 구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는 장학관 1인<br>4. 교육전문가 2인<br>5. 구에 거주하는 덕망있는 학부모 3인 | <b>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b> ① (현행과 같음)<br>②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br>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br>1. 구본청 <u>5급 이상</u> 공무원 2인<br><삭제><br>2. (현행 제3호와 같음)<br>3. (현행 제4호와 같음)<br>4. 기타 학교교육에 관심이 있고 덕망있는 마포구민 5인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 제3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p> <p>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p> <p>1.~3. (생략)</p> | <p>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⑤ ----- 각 호의 어느 하나-----<br/>-----<br/>1.~3. (현행과 같음)</p> |
| <p><b>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b>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4. (생략)</p> <p>② (생략)</p>                                     | <p><b>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b> ① -----<br/>-----<br/>각 호의 어느 하나-----<br/>-----<br/>----- 그렇지 않다.</p> <p>1.~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